

북한 농업부문의 인센티브제도와 개혁방향성

전 형 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논문 요약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역사적으로 보면 분권화의 진전, 급진적 개혁 그리고 계획경제시스템의 해체라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었다. 농업부문에서도 전통적인 집단경영시스템은 분권화의 진전으로 청부시스템으로의 전환과정을 거쳐 결국 개인경영시스템으로 이행하였다. 분권화의 진전은 생산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분배의 유일한 척도인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즉 노동보수지불체계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소련 콜호즈의 노동보수지불체계는 초기에 전체 소득 중에서 국가와 집단농장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난 후 나머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노동일에 따라 분배하는 소위 잔여원리로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선되어 초기의 잔여원리를 극복하고 임금형태에 가까운 매월 보증지불제로 변화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청부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노동보수지불체계는 점차 개인경영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인민공사에서는 잔여원리에 따른 노동보수지불방식이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3급소유관리제도의 실시로 사회주의 초기부터 분권화가 진전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산대 단위에서 청부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실험된 경험을 가지고 1978년 농업개혁에 착수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의 협동농장은 1960년대 초에 농업지도관리체계가 확립된 이후 일관되게 집단경영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분권화의 진전이 극히 미약하다. 또한 잔여원리에 따른 노동보수지불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일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보다 철저히 관철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분배액의 증가는 반드시 집단(분조, 작업반) 분배액의 증가를 통해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제한하였다.

북한을 광의의 이행기경제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체제전환 유형은 전환의 주체와 속도, 순서와 방향 등에서 사회주의 개혁모델인 동아시아형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동아시아형 모델처럼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의 개선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국 농민들의 노동의 한계보수와 한계생산물이 일치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선행 이행기경제의 경험에서 보면 그 방향은 집단경영시스템→청부시스템→개인(가족)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며 현재 북한의 농업제도상 청부시스템의 맹아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조관리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I. 서론

1990년대 들어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체제이행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개별 이행기경제(economies in transition)의 전환정책과 초기조건에 따라 이행의 주체와 속도, 순서와 방향에서 차이가 존재했지만 체제이행은 본질적으로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행의 과정에서 공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화 정도가 낮았던 농업부문의 개혁은 우선적인 고려대상이었다. 특히 소유제의 다양화와 점진적 시장화를 표방한 동아시아형 체제전환모델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축적의 임무까지 부여받았다.

구 사회주의권의 체제이행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에도 북한은 외견상 전통적 계획경제체제를 흔들림없이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촉발된 경제난과 식량난이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지 오래지만 개혁의 움직임은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미 오래 전부터 '자력갱생에 입각한 민족자립경제 건설' 노선에 익숙한 터라 현재의 위기는 내핍(耐乏)으로 요약되는 '고난의 행군'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된 원인은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이 도외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decentralization)에 기초한 개혁에 있다는 것이 역사적 보편성 차원의 교훈이다.

구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농업부문의 개혁은 사경제 영역이 확대되고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가 진전된 조건에서 추진되었다. 분권화의 진전은 생산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과정에 다름아니며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소득분배의 유일한 척도인 노동에 대한 보수지불체계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에서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결국 노동보수지불체계에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주의 농업부문에서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개선을 집단경영시스템 전환의 중요한 모티브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광의의 이행기경제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북한의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인센티브제도(=노동보수지불체계)의 내용과 특성을 체제 이행을 경험한 소련, 중국과 비교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혁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전제적 논의: 기본개념의 검토

1. 사회주의 소득 개념

분배는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고 매개하는 사회적 재생산의 한 국면으로서 경제적 후생의 분배상태는 객관적인 측정가능성이란 이유 때문에 소득(income)의 분배상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의 개념과 계산체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에서 소득은 일정기간(통상 1년)에 생산된 생산물(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부가가치(value added) 개념으로 정의된다. 협의로는 생산을 위해 제공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다시 말해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被傭者報酬)와 자본 및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營業剩餘)의 합계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의 소득 개념은 순가치(net value) 개념으로 설명된다. 사회주의 경제학에서는 일정기간에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가치형태로는 $c+v+m$)¹⁾를 생산을 위해 소비된 생산수단(불변자본)의 이전가치(c) 부분과 새로이 생산된 순가치($v+m$) 부분으로 구분한다. 사회주의에서 소득은 두번째 부분인 순가치를 의미한다.

1) 이 글에서는 북한 집단농장(협동농장, 국영농장)의 수입과 지출의 구성, 소득분배 및 노동보수지불체계를 파악하는 데 부분적으로 가치개념을 이용하였다. 가치개념은 본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부분적으로 가치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가치이론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치구성은 $W=c$ (불변자본가치)+ v (가변자본가치)+ m (잉여가치)로 표현되며, 생산물의 가치가 시장에서 실현된 것을 생산물의 가격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c 는 유동자본 및 고정자본의 소모를 포함하는 생산비로, v 는 임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득을 생산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부가가치 개념은 사회주의의 순가치 개념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순가치 개념은 조가치(粗價値)인 총생산물($c+v+m$)에서 불변자본가치(c)를 뺀 값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불변자본가치에는 원재료와 같은 유동불변자본플로우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불변자본플로우 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순가치 개념은 다시 정의하면 조가치-(유동불변자본플로우+고정불변자본플로우)와 같다.²⁾

한편 자본주의의 부가가치 개념은 총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제한 부분으로 정의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조부가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부가가치에서 다시 고정자본소모를 뺀 순부가가치야말로 진정한 부가가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순부가가치라는 개념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고정자본소모를 포함한 조부가가치가 부가가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 개념이 새로이 생산된 가치를 의미하려면, 이론적으로는 고정자본소모를 포함하지 않는 순부가가치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 부가가치를 이처럼 순부가가치의 의미로 이해하면, 그것은 순가치와 유사하다.³⁾

자본주의 국민소득계정에서 국민총생산(GNP)은 총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뺀 조부가가치를 의미하며, 국민순생산(NNP)은 조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를 뺀 순부가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광의의 국민소득 개념, 즉 국민총생산에 대비되는 사회주의의 국민소득 개념은 국민순생산과 대체로 유사하다.

2. 사회주의 분배 원칙

사회적 규모에서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사회총생산물($c+v+m$)은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보전(c)과 개인적 소비(v) 그리고 축적(蓄積, m)으로 각각 배분되어야 한다. 소득이 소

2) 정성진, 『한국경제에서의 마르크스비율의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pp. 88~89.

3) 위의 글, pp. 116~117.

비와 축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은 역사적으로 고유한 생산양식에 기초하여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와 동일한 관계가 분배관계에도 성립되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분배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분배는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노동에 따른 분배'인가?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대략 두 가지 요인으로 이 물음에 답하고 있다.

첫째, 소유관계의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소유한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구매하여 생산을 진행시키며 생산물 역시 자본가의 소유이다. 따라서 총생산물 가운데 생산수단을 보전(c)하고 남은 소득(v+m)의 분배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생산물의 소유자인 자본가이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법적, 제도적으로 생산수단의 공유제(公有制)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생산물 역시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며 공동소유이다. 따라서 총생산물 중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생산수단을 보전하고 남은 소득 가운데 소비로 사용되는 부분(v)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닌 생산과정에서 지출된 노동(勞動)의 양과 질이다. 따라서 '노동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 소득분배의 주요 형태이다.

둘째, 사회주의 단계의 노동의 성격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완성단계로 설정된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생활상의 요구이며 이로 인해 분배에는 이론적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인 사회주의 단계에서 노동은 아직 생활상의 요구가 아니라 생활수단을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에 따른 분배'는 필요에 따른 공산주의적 분배가 실현되기까지의 과도적인 형태로 인식된다.

사회주의 단계의 노동의 성격상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에 대한 자극형태로서 지속적인 혁명의식 고양을 위한 정치·도덕적 자극과 함께 생산적인 노동을 보다 많이 지출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보수를 지불함으로써

써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즉 물질적 자극을 필연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⁴⁾

이상에서 사회주의가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관철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노동에 따른 분배’는 내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이것 역시 두 가지로 답하고 있다.

첫째,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를 의미한다. 노동의 양은 노동시간, 생산된 생산물의 양 또는 작업량으로 표현된다. 노동의 질은 노동의 숙련 정도, 기술수준 등에 의해 규정된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은 생산물의 양 또는 작업량이 많거나 질이 높은 노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노동에 비하여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질적 자극의 기본 형태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은 다양한 형태로 노동보수지불체계에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둘째, ‘노동에 따른 분배’는 또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남녀노소의 차이를 불문하고 동일한 보수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에 따른 분배’가 평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주의에서 평균적 분배는 “노동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약화시킨다는 점”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배제되고 있다.⁵⁾

3. 사회주의 노동보수제⁶⁾

사회주의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국영부문 노동자 및 사무직 노동자의 임금(賃金)⁷⁾과 집단농장 농민의 노동보수(勞動報酬)가 그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가

4) 김원삼·한득보,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연구에서의 몇가지 이론문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p. 148.

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농업경제학』(평양: 1985), p. 206.

6) 김보근, 『북한 노동보수제의 비판적 고찰: 평등과 효율의 관점에서』(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을 토대로 하였다.

7) 북한은 초기에는 ‘사회주의 임금’으로 불려왔으나 1978년 이후 이를 ‘생활비’로 바꿔 부르고 있다.

지 형태, 즉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소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집단농장과는 달리 국영농장의 노동보수는 생산수단의 국가적 소유관계가 형성된 다른 국영기업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월 정액임금의 형태로 지불되었다.⁸⁾

사회주의 노동보수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사회주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자본주의 임금제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동력이 상품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구분요인이다. 자본주의에서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으로서 존재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서는 노동력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국가주도의 노동력 배치를 시행한다. 이렇게 노동력이 고정된 상태의 노동보수제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기능하는 자본주의 임금제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둘째, 보수의 크기 결정이 사전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도 중요한 구분 요인이다. 사회주의에서는 노동보수가 노동의 양과 질의 평가를 통해 사전에 결정된다. 그리고 노동정량(norma), 노동일 등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금제와 구별된다.

사회주의 노동보수제는 원칙적으로 노동의 양과 질 다시 말해 노동의 투입에 의존하는 분배체제이므로 노동지출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산출을 투입의 대리변수화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 때 사용한 기제가 노동정량이다. 노동정량은 생산조건의 차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표준적인 노동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양을 의미한다. 노동정량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경제적 범주로서

8) 북한 국영농장의 노동보수지불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과 구별된다. 북한의 국영농장에서도 초기에는 매월 정액임금을 지불하였으나 1960년 작업반 독립채산제 도입 이후 노동지출 및 분배의 척도로서 노동일 개념인 '등록노동'을 도입하고 획득한 등록노임을 토대로 임금을 지불하였다. 이 때의 임금은 더 이상 정액임금이 아닌 도급임금의 형태였다(자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노동일 개념을 도입하였다.⁹⁾

노동일 개념의 도입은 농업생산의 특성상 노동지출시기와 생산물의 산출시기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농업생산의 특성상 노동과정에서 지출된 노동의 양과 질의 결과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생산과정이 완결된 후에 산출된 생산물에 의해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농업생산의 최종결과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된 노동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의 시기와 분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사회주의 국가의 집단농장에서는 개별 농장원들이 1년 동안 획득한 노동일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는 형태의 노동보수지불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보수지불체계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인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이 관철되는 형태로서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자극의 형태였다.

III. 북한 농업부문의 인센티브제도¹⁰⁾

1. 협동농장의 인센티브제도

1) 협동농장의 수입과 노동보수지불

북한의 협동농장에서는 수확이 완료된 후 한 해 동안의 경영활동을 평가하고 수입을 분배하는 결산분배를 진행하는데 이를 위해 총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농장의 소득을 확정한다. 협동농장의 한 해 동안의 총수입은

9) 개별 농작업에 대해서 평균적인 조건하에서 평균적인 노동력이 1일 동안 수행할 있는 작업의 양과 질을 기준작업량(노동정량)으로 정하고 이를 완수했을 때의 노동일은 해당 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정도 및 노동의 난이도, 생산과정에서의 중요성 등을 토대로 결정되었다. 노동일은 소련, 중국, 북한에서 각각 Trudoden, 分, 노력일로 지칭되었다.

10) 홍달선, 『우리나라 농촌경리부문에서 물질적 관심의 원칙의 창조적 적용』(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 日本朝鮮研究所, 『最近の朝鮮の協同農場: 金日成テレー・分組都給制と農民生活 調査研究資料3』, (東京: 1967)을 토대로 하였다.

현물 및 화폐 수입으로 구분된다. 현물수입은 당해년도에 생산된 생산물(농산물, 축산물, 과일 및 채소, 누에고치, 물고기, 부업생산물 등)과 전년 이월 생산물로 구성된다. 한편 화폐수입은 당해년도 생산물 및 전년 이월 생산물의 판매수입, 봉사료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¹¹⁾ 협동농장의 제일차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는 국가수매과제를 이행하는 것으로 생산물의 판매수입에는 수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에서는 농산물 및 농업부산물 등을 수매할 때 농산물수매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총수입과 지출은 사회주의 경제학 이론에 의거하여 가치형태로 분석될 수 있다. 한 해 동안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현물 및 화폐 포함)을 화폐형태로 표현한 협동농장 총수입의 가치구성은 $c+v+m$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협동농장의 실제적인 생산과정은 협동농장 자체 농장원의 노동뿐만 아니라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등 국가기업소가 제공하는 생산수단 및 노동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의 총수입을 발생시킨 요인에 따라 구분하면 협동농장의 총수입(R)은 협동농장 고유의 생산수단과 농장원들의 노동에 의한 수입(R^*), 농기계작업소의 생산수단과 노동에 의한 수입(R_m), 관개관리소의 생산시설과 노동에 의한 수입(R_w), 도시의 노동자, 사무원, 학생, 군인들의 지원 노동에 의한 수입(R_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농장 고유의 생산수단과 농장원들의 노동에 의해 생산된 수입(R^*)의 가치구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R &= c+v+m \\ R_m &= c_1+v_1+m_1 \\ R_w &= c_2+v_2+m_2 \\ R_s &= v_3+m_3 \\ R^* &= c^*+v^*+m^*=(c+v+m)-[(c_1+v_1+m_1)+(c_2+v_2+m_2)+(v_3+m_3)] \end{aligned}$$

11) 봉사료 수입은 협동농장이 관리 운영하는 정미소, 제분소, 국수공장, 제재소 등에서의 가공료 수입과 양복점,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등에서 얻는 수입이다. 기타 수입에는 고정재산의 처분 수입, 이동 영화상영 수입 등이 포함된다. (변승호, “협동농장 수입의 구성과 본질적 특성,” 『경제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 3, (누계 104호), p. 29).

$$= (c-c_1-c_2) + (v-v_1-v_2) + (m-m_1-m_2-m_3)$$

$$\text{단, } c^* = c - c_1 - c_2, \quad v^* = v - v_1 - v_2, \quad m^* = m - m_1 - m_2 - m_3$$

협동농장의 실질적인 총수입($c^* + v^* + m^*$)으로부터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보전부분(c^*)을 공제한 부분($v^* + m^*$)이 협동농장의 소득으로 확정된다. 여기서 c^* 부분은 생산비 지출에 해당하지만 경제학적 의미의 생산비, 원가라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농업경영에서 소득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중간재비+고용노력비)를 제한 것이며 조수입에서 생산비(경영비+자본 및 토지용역비+가족노동보수+자가축력비)를 제한 것은 순수익으로 정의된다.

생산수단의 가치보전부분(c^*)은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보전과 생산 및 판매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주로 중간재비)을 포함하는 것으로 농장원들의 노동보수(v^*)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동농장의 소득은 자본주의 농업경영에서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소득개념과 가깝다. 협동농장의 생산비 지출은 중간재비의 경우 국가가격제정기관에 의해 계획적으로 정해진 국정소매가격으로 지출된다. 관개사용료, 농기계작업료 등은 대부분 현물로 지출된다.

한편 협동농장의 소득분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 공동기금의 조성과 노동보수의 지분이 그것이다. 협동농장의 소득에서 가장 먼저 분배되는 것은 공동기금으로 소득의 20~30%를 차지하며 m^*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협동농장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남은 부분(v^*)에 대해서 개별 농장원이 1년 동안 획득한 노동일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불한다.¹²⁾

북한 협동농장의 노동보수지불은 기본분배와 보충분배로 구분된다. 기본분배는 앞서 지적한 대로 협동농장의 소득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남은 잔여부분에 대해서 개별농장원이 1년 동안 획득한 노동일수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것으로 개별 농장원의 기본분배몫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2) 협동농장의 노동일 평가는 부문별(곡물, 축산, 관리원 및 작업반장)로 각기 다른 3가지 방법으로 실시된다.

$$\text{기본분배액 } W_i = D_i \times T_p / \sum D_f$$

W_i : 농장원 분배액

T_p : 분배총량(총수입-생산비-공동기금)

D_i : i 농장원 노동일수

$\sum D_f$: f 농장 총노동일수

한편 보충분배는 분조 혹은 작업반 단위로 부여된 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한 경우 초과한 양에 해당하는 만큼 분조원 혹은 작업반원에게 기본분배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것이다. 보충분배에서도 노동보수지불의 척도는 여전히 기본분배에서와 같이 구성원이 획득한 노동일수이다. 현재 북한 협동농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는 모두 보충분배형태로서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이다.

북한 협동농장에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보충분배는 '작업반에 부과된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한 경우 그만큼 노동일을 가산해주고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작업반원들이 획득한 총 노동일의 10%까지 삭감'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 제 39조). 그러나 이것은 기본분배의 결함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강하게 자극하는 유인 역할을 수행할 만큼 구체적이지는 못했다.

보충분배에서 분조관리제의 적용은 분조단위로 기본분배의 척도인 노동일을 재평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며 분조원의 기본분배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용한다. 이에 반해 작업반우대제는 협동농장의 소득에서 공동기금, 기본분배액을 제하고 남은 우대기금을 가지고 기본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분배하는 노동보수지불형태이다.

2) 작업반우대제

작업반우대제는 1960년 2월 김일성의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현지도도를 계기로 농장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보충분배형태로 도입되었다. 작업반우대제는 작업반별로 부과된 생산

계획 과제의 90%를 우대기준으로 설정하고 우대기준을 초과수행한 경우, 각자가 획득한 노동일에 따라서 보수를 지불하는 기본분배 외에 초과한 양에 해당하는 만큼 작업반원에게 추가로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그러나 우대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분배액에서 5~15%를 공제하여 협동농장의 공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다.

협동농장에서 우대기금의 분배는 일종의 상금지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우대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작업반원들과 의무노동일을 채우지 못했거나 자급비료 생산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농장원들에게는 우대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작업반의 노동일당 우대액은 작업반의 우대기금을 작업반의 총 노동일로 나눈 값이며 이에 기초하여 분조의 우대액과 개별 농장원들의 우대액을 산출하였다.

〈표 1〉 작업반우대제하의 노동보수지불

지 표	작업반 종류					
	I	II	III	IV	V	VI
· 총생산액(=계획수행률)	110	100	95	90	85	80
- 국가납부	10	10	10	10	10	10
- 생산비	35	35	35	35	35	35
- 공동기금	5	5	5	5	5	5
· 노동보수의 크기(v)	60	50	45	40	35	30
· 노동보수의 구성						
- 기본분배	40	40	40	40	40	40
- 보충분배	+20	+10	+5	0	-5	-10

자료: 홍달선, 『우리나라 농촌경리부문에서 물질적 관심의 원칙의 창조적 적용』,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3), p. 39의 표를 재구성

작업반우대제는 우대기준이 국가의 계획과제보다 10%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 때문에 협동농장 전체의 기본분배 총량은 이전보다 줄이는 반면 보충분배액은 늘리고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생산계획과 우대기준의 차 혹은 생산계획을 100% 수행한 경우의 분배액과 우대제 실시에 의한 기본분배액의 차를 n 이라 하고 생산계획

100% 수행시의 분배액을 v 로 나타내면,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하는 경우 기본분배의 크기는 $v-n$, 계획수행시의 분배액에 대한 기본분배의 비율은 $1-(n/v)$, 기본분배의 감소율은 n/v 로 나타난다. 따라서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하는 경우 기본분배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n/v 의 비율로 감소한다(〈표 1〉 참조).¹³⁾

결과적으로 작업반우대제의 실시로 협동농장의 기본분배기금의 총량은 이전의 '협동농장 총수입-생산비-공동기금'에서 '협동농장 총수입-생산비-공동기금-우대기금'으로 감소하였다. 작업반우대제가 적용되는 상태에서 개인분배몫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구해진다.

$$\text{작업반우대제하의 개인분배몫 } S = (D + Y) \times M$$

D: 기본분배기금/농장의 총노동일수

Y(우대단위): 작업반 우대기금/작업반의 총노동일수

M: 개별 농장원이 획득한 노동일수

3) 분조관리제

분조관리제는 그 동안 작업반 내부의 단순한 작업조직에 불과했던 분조를 협동농장의 노동조직 및 노동보수지불 단위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서 노동조직과 노동보수지불체계의 개선책으로 도입되었다.

먼저 노동보수지불체계의 개선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 협동농장에서는 분조관리제의 도입이전까지는 생산결과와 결부시켜 노동일을 재평가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부터 작업반우대제하에서도 작업반원들은 계획과제를 초과수행하는 것보다 오로지 노동일수를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분조관리제는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노동의 질을 분조단위로 생산성평가에 의해서 측정하고 그것에 대응한 분배의 조절을 통해 농장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

13) 홍달선, 『우리나라 농촌경리부분에서 물질적 관심의 원칙의 창조적 적용』, p. 41.

고자 하였다.

분조관리제는 노동지출과 분배의 사이에 시간적 괴리가 존재하는 농업 생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지출의 척도로 도입된 노동일이 그대로 노동 보수지불의 척도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평균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였다. 분조관리제는 지출노동력에 대한 노동일의 평가를 생산량에 의해서 재평가하는 것으로 노동일이 지니는 결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노동조직의 개선 측면에서 분조관리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분조관리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협동농장의 노동 및 생산의 기본단위는 작업반이었다. 작업반에는 일정한 토지, 역축, 농기구를 비롯한 각종 생산수단, 건물 및 시설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작업반내 분업과 협업이 진전되면서 작업반에 대한 협동농장의 간부나 작업반장의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반원들의 노동지출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워 노동 및 생산단위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농업노동의 특성인 노동과정의 분산성, 노동결과의 장기성으로 인해 생산수단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책임제도의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되었다.¹⁴⁾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작업반보다는 규모가 작은 단위를 기초로 해서 생산을 조직하고 분배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 분조관리제였다. 이것은 1965년 5월 11일 소위 '분조관리제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에 대한 김일성의 현지지도 과정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김일성은 작업단위가 너무 클 경우 생산조직관리, 노동력관리, 농기구관리 등에서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며 반대로 지나치게 작을 경우 기술혁명 수행에 지장을 주어 대규모 경영의 이점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존 작업반을 새로 개편하여 그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분조를 개편(15~20명)하는 쪽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하였다.¹⁵⁾

노동조직 측면에서 분조가 작업반의 결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이후 작업반우대제 존속하의 '분조도급제', 작업반우대제를 분조로 까지 단위를 나눈 '분조우대제', 분조보다도 더욱 단위를 나눈 '포전별 개

14)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농업경제학』 (평양: 1985), 앞의 책, pp. 64~65.

15) 근로단체출판사, 『사회주의 농촌에 깃든 사랑의 역사』 (평양: 1979), pp. 93~95.

인도급제' 등 다양한 형태가 실험되었다. 16)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은 1965년 11월 15~17일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된 여러 형태를 비교 검토하여 1966년부터 전국적으로 분조관리제(시행초기에는 분조도급제로 지칭되었음)를 도입하였다. 17)

분조관리제는 작업반의 하부 단위인 분조(15~20명)에 일정한 면적의 토지와 노동력, 역축 및 기타 생산수단을 고정시키고 분조 단위로 정보당 수확량 및 노동일 투하 계획을 부여한 후 결산 분배시 계획수행 정도에 따라 분조원들의 노동일을 재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인센티브제도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한 분조가 논 30정보를 경작한다고 가정하고 이 분조에 국가계획에 의해 벼의 정보당 생산계획이 5톤, 정보당 노동일 투하 계획이 300으로 주어졌다면 생산계획을 100% 수행할 경우 이 분조는 150톤을 생산하고 9,000노동일을 받게 된다. 수확 결과 만약 이 분조의 정보당 생산량이 5.5톤이 되었다면 총 생산량은 165톤이 되므로 분조는 계획생산량 150톤에 대하여 미리 결정된 9,000노동일을 받는 이외에 초과생산량 15톤에 대해서도 1톤당 60노동일씩 계산하여 900노동일을 더 분배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분조관리제의 도입으로 작업반단계에서 우대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본분배액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우대기준에 미달한 경우 분조단계에서 자동적으로 노동일의 삭감을 받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충분배형태인 분조관리제는 노동일의 재평가를 통해 기본분배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용한다. 협동농장에서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가 시행되는 조건에서 기본분배의 절차와 방법은 <표 2>와 같다.

16) 日本朝鮮研究所, 『最近の朝鮮の協同農場: 金日成テーゼ・分組都給制と農民生活』, p. 14.

17) 김일남·김세국·김용언, 『조선농업사 4』 (평양: 농업출판사, 1991), p. 57.

〈표 2〉 협동농장의 기본분배 절차와 방법

분배절차	내용 및 계산식
1. 기본분배기금 확정 ↓	협동농장 소득에서 공동기금, 우대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
2. 협동농장의 1노동일당 분배몫(D) ↓	$D = F_p / N$ F _p : 협동농장의 기본분배기금 N : 농장의 재평가된 총노동일수
3. 분조의 분배몫(B) ↓	$B = D \times N_b$ N _b : 분조의 재평가된 총노동일수
4. 분조의 1노동일당 분배몫(D _b) ↓	$D_b = B / N_b'$ N _b ' : 분조의 재평가하지 않은 총노동일수
5. 개별농장원 기본분배몫(S)	$S = D_b \times M$ M : 개별 농장원이 획득한 노동일수

자료: 장보인, 『조선에서의 농업협동경리의 지도관리문제에 대한 연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pp. 100~101 참조하여 필자 작성

분조관리제는 1996년부터는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보다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형태로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는 분조 규모를 대폭 축소(7~8명)하고 우대제를 적용하며, 생산계획을 하향조정하고 계획을 초과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자유처분권이 허용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¹⁸⁾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내용적으로 잔여원리에 따른 분배 원칙을 극복했거나 분권화의 진전을 통한 집단경영시스템의 청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요소는 적다. 그러나 초과생산의 경우 그 양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일을 가산하여 보상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현물로 분배하고 자유처분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 협동농장의 기본분배와 보충분배를 토대로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가 적용되는 상태에서 농장원 개인분배몫의 결정은

18) 『조선신보』, 1996.10.24.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구해진다. 다만 여기서는 실제적인 도입여부가 불확실한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고려한다면 생산계획을 초과한 생산물은 직접 현물로 분조원에게 분배하므로 기본분배과 보충분배의 결정과정에서 노동일의 재평가 절차는 소멸되고 작업반우대제하의 노동보수지불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반우대제 및 분조관리제하의 개인분배액

$$S' = (D' + Y') \times (M \times \alpha)$$

D': 기본분배기금/농장의 재평가된 총노동일수

Y': 기본분배기금/ 작업반의 재평가된 총노동일수

M: 개별 농장원이 획득한 노동일수

α (분조재평가계수)

: (투하계획 노동일수/실제노동일수)×계획수행률

2. 국영농장의 인센티브제도

1) 작업반독립채산제의 도입

1960년 국영농장에 작업반독립채산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북한 국영농장에서는 독립채산제와 지배인 단독책임제가 실시되고 있었다.¹⁹⁾ 그러나 이 당시의 독립채산제는 “국영농장의 일체 생산활동은 국가계획에 의거하여야 하며, 생산물 단위의 계획원가 및 생산물 가격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영농장규정 제5조)”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독립채산제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국영농장의 생산물은 국가에 전량납부하고 개인시장에 판매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의 처분도 불허하였으며 현물세는 부담하지 않았다(제5조). 임금지불형태는 국영기업과 마

19) 북한은 1949년 12월 13일 농림성 규칙 제23호로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독립채산제와 지배인 단독책임제는 각각 규정 6조와 7조에 명시되어 있다.

찬가지로 국가의 임금지급규정에 따라 보통임금제 및 보통도급제, 누진도급제를 적용하였고 인센티브제도로써 단순상금제와 누진상금제를 채택하고 있었다(제19조).

국영농장 작업반독립채산제 및 상금제(이하 작업반채산제라 칭함)는 국영기업에 대한 경영관리체계가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인 1960년에 내각결정 제35호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작업반채산제는 생산액 지표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지만 현물생산량 지표는 해당기업에서 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계획기관에 등록하는 형태로 운영되던 국영기업의 채산제와는 달리 생산계획이 여전히 중앙의 계획에 따라 운용되어 국영기업과 같은 정도의 분권화는 진전되지 않았다. 다만 국영농장 본장(本場)과 작업반의 관계에서 작업반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분배상태도 개선되는 형태로 제한적인 분권화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작업반채산제 도입으로 작업반은 독자적으로 생산적 순환을 완결하고 자체의 채산을 맞출 수 있는 생산단위로 변모되었다. 또한 다른 모든 국가기업소와 마찬가지로 국영농장에도 적용되고 있던 일체의 특혜가격(국정도매가격, 공급가격, 격차가격, 납고가격)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공급받는 생산수단은 고정도매가격으로, 기타 농자재는 소매가격(협동농장에 공급하는 가격과 동일가격)으로 공급받았으며 국가에서는 고정된 구매가격으로 생산물을 구매하였다. 농자재 공급시 국가는 고정된 도매가격으로 국영농장에 공급하지만 국영농장은 소매가격으로 작업반에 공급하도록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은 물자가격격차금(物資資格隔差金) 명목으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한편 작업반채산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작업반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였는데 규모는 지역적 조건 외에 기계화 수준, 작물배치 상황, 노동자와 기술자들의 기술수준, 작업반 지도원들의 실무능력을 고려하여 농업노동자의 수가 100~150명이 되도록 편성하였다.

2) 작업반의 수입과 지출

작업반채산제에서는 국영기업과 마찬가지로 작업반의 총수입을 총생산

액(c+v+m)이 아닌 판매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²⁰⁾ 작업반의 총수입으로 규정된 당해년도 판매액의 가치구성을 통해 작업반의 수입과 지출, 소득의 확정과 분배과정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작업반의 총생산액, 자체소비액(당해년도 생산과정에서 자체소비된 생산물의 화폐금액), 판매액, 이월생산기금(다음 연도의 생산을 위해 이월하는 생산물의 화폐금액), 이윤을 각각 Y, C, S, T, Π라고 하면 국영농장 1개 작업반의 연간 총생산액의 가치구성은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 작업반 총생산액의 가치구성

생산물의 구성	화폐형태	가치형태
자체소비 생산물	자체소비액	$C = c_1+v_1+m_1$
상품판매 생산물	상품판매액	$S = c_2+v_2+m_2$
차년 이월 생산물	이월생산기금	$T = c_3+v_3+m_3$
작업반 총생산물	작업반 총생산액	$Y = c+v+m$

자료: 홍달선, 『우리나라 농촌경리부분에서 물질적 관심의 원칙의 창조적 적용』 p. 54 참조하여 필자 작성

<표 3>에 의거하여 작업반의 총생산액(Y)은 가치형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 c+v+m = (c_1+v_1+m_1) + (c_2+v_2+m_2) + (c_3+v_3+m_3)$$

$$\text{단, } c = c_1+c_2+c_3, v = v_1+v_2+v_3, m = m_1+m_2+m_3,$$

여기서 작업반의 총수입으로 규정된 당해년도 판매액(S)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 = c_2+v_2+m_2 = (c+v+m) - (c_1+v_1+m_1) - (c_3+v_3+m_3)$$

그러나 이것은 당해년도의 생산과정에서 자체소비된 생산물과 다음 연도의 생산을 위해 이월되는 생산물(이하 이월생산기금(移越生産基金)이라

20) 일반적으로 크던 작던 임의의 생산단위의 경제사업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총생산물(가치형태로는 c+v+m)이 시장가격으로 실현된 총생산액이다.

고 칭합)을 시장판매가격(수매가격 또는 소매가격)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로는 자체소비 원가(原價)로 처리해야 하므로 $m_1=0$, $m_3=0$ 이 된다.

한편 $m=m_2$ 이므로 작업반의 당해연도 판매액(S)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S &= c_2+v_2+m_2 \\ &= (c+v+m_2)-(c_1+v_1)-(c_3+v_3)=c+v+[m_2-(c_1+v_1)-(c_3+v_3)] \end{aligned}$$

결과적으로 작업반은 총수입에서 불변자본가치(c)와 가변자본가치(v)를 완전히 보상하고, 판매이윤(m_2)으로부터 당해년도 생산과정에서 소비한 자체소비 생산물의 원가(c_1+v_1)와 이월생산기금(移越生産基金)의 원가(c_3+v_3)를 공제한 것을 실제이윤으로 취득하게 된다.

$$\Pi = m_2-(c_1+v_1)-(c_3+v_3)$$

작업반의 총수입으로 규정된 판매액을 총생산액과 비교해보면, 총생산액 일 경우의 m 대신에 판매액일 경우에는 $m_2-(c_1+v_1)-(c_3+v_3)$ 가 대응하여 $m > \Pi$ 이 된다. 이 때문에 작업반의 총수입을 총생산액이 아닌 판매액으로 하는 경우 작업반의 경제성과를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생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공업생산과 달리 농업생산물 중 일부는 자체의 재생산과정에 당해년도와 다음 연도에 현물형태로 직접 소비된다. 따라서 실제로 조성된 $m_2-(c_1+v_1)-(c_3+v_3)$ 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조성되지도 않는 m 을 채택할 경우 현실을 과장하게 된다.

그리고 당해년도 자체소비 생산물과 이월생산기금이 포함하고 있는 자체의 c , v 가치부분이 실제로 판매를 통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작업반에서는 당해년도 생산물의 전체 c , v 가치부분을 전부 당해년도에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작업반에 실제로 남는 m 가치부분은 조성된 m 가치부분으로부터 당해년도의 자체소비 생산물과 이월생산기금의 자체 원가인 c , v 가치부분 만큼 감소한 $m_2-(c_1+v_1)-(c_3+v_3)$ 가치부분이 된다.

한편 작업반의 총수입에는 당해년도에 생산된 생산물의 판매액뿐만 아니라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생산물의 판매액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생산된 생산물을 다음 연도에 판매하기 위해 이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작업반원들에게 유리하지도 않다는 인식하에 작업반채산제 실시 이후 당해년도에 생산한 생산물을 다음 연도의 판매로 이월시

키는 경우 다음 연도의 생산기금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등록된 국가 재산'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그 감소는 지출항목에 포함시켜 판매를 목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생산물을 가급적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였다.

결국 작업반채산제는 작업반의 총수입을 총생산액이 아닌 판매액으로 규정함으로써 $m_2 - (c_1 + v_1) - (c_3 + v_3)$ 을 실제 이윤으로 취하도록 하여 작업반들로 하여금 m_2 를 m 에 접근시키는 방향에서, 다시 말해 생산원가인 $(c_1 + v_1)$ 와 $(c_3 + v_3)$ 를 최소 한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는 인센티브제도라고 할 수 있다.

확정된 작업반의 총수입 $S = c + v + [m_2 - (c_1 + v_1) - (c_3 + v_3)]$ 에서 생산비(자재비, 자재비의 기타) 및 기타 지출인 c 의 전체를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작업반의 소득 $v + [m_2 - (c_1 + v_1) - (c_3 + v_3)]$ 이 된다. 생산비 지출중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것은 자재비이며 그 중에서도 비료, 사료, 유류, 윤활유가 80~90%를 차지하여 이들 자재를 절약하는 정도 여하에 따라 작업반의 지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외에도 감가상각비, 생산비에 포함되는 노임 및 가급금(加給金)²¹⁾, 농기계작업료, 관개사용료, 일반관리비 등의 지출이 있다. 기타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량가격격차금이다. 국가에서는 작업반원과 그 부양가족들이 소비하는 양곡을 작업반에 수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작업반원들은 공급가격으로 구매하였다. 수매가격과 공급가격의 격차가 바로 식량가격격차금이며 작업반의 수입에서 비용으로 지출되는데 기타 지출 중에서 60~7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 사회문화비도 공제되었다.

21) 기능등급과 직제에 의한 임금기준액으로서의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조건(노동조건, 근속연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대해 일정비율 또는 절대액으로 기본임금 외에 지불하는 보충임금을 의미한다(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10).

3) 노동보수지불체계

가) 기본분배

작업반채산제 도입 이전의 임금지불체계는 다른 모든 국가기업소와 마찬가지로 노동지출의 평가와 노동보수지불의 척도로 정액의 화폐임금이 적용되었다. 임금은 국영농장의 수입이 아닌 국가의 임금기금으로부터 지출되었으며 국영농장의 노동자들은 경영상 손실과 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의무도 가지지 않았다.

작업반채산제 도입으로 임금지불은 협동농장과 같이 기본분배와 보충분배로 구분되었다. 작업반의 총수입에서 지출, 즉 c 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전히 보상한 다음 v 를 분배하게 되는데 v 의 분배에 앞서 c 가 완전히 보상되어야 하므로 v 를 이전과 같이 매월 정액임금으로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 v 는 국영농장 범위에서 규정되지 않고 작업반 단위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므로 임금은 작업반의 최종 경제성과를 평가한 다음에야 확정적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영농장에서도 협동농장과 마찬가지로 노동보수지불이 노동지출과 분리되어 농업생산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보수지불체제로 변화되었다.

작업반채산제 실시로 노동의 지출과 평가가 분리됨에 따라 작업반원들의 노동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등록노임(登錄勞賃)이다. 등록노임은 임금규정에 의해 매월 계산 등록된 금액 즉, 일정한 작업정량(norma) 수행에 대하여 화폐로 표시된 도급임금 계산액이다. 이것은 작업반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연말에 작업반의 결산분배시에 실제로 받게 될 임금의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작업반채산제 실시로 작업반원들은 매월 등록노임을 취득할 뿐 실지로는 매월 임금을 지불받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불금(前佛金)을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불금은 개별 작업반원이 취득한 등록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가족수를 참작하여 작업반채산제 도입 이전 월 평균임금의 약 50% 수준에서 지급하였으며 연말 결산시 정산하였다.

작업반원들은 연간 취득한 등록노임을 가지고 v 의 분배에 참가하게 되는데 총수입으로부터 지출을 공제한 나머진 소득 $v + (m_2 - (c_1 + v_1)) -$

(c_3+v_3) 은 일정한 금액을 총체적으로 표시할 따름이며 v 의 한계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다. v 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국영농장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작업반채산제 도입 이전의 월 평균임금보다 약 30% 높은 수준에서 규정되었다. 작업반원들의 평균임금이 이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상금지급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임금수준 즉 v 의 한계를 이와 같이 높게 설정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였다. 작업반의 소득 $v+[m_2-(c_1+v_1)-(c_3+v_3)]$ 에서 v 의 최고한계까지 규정되어 계산된 v 의 총액이 작업반의 임금기금이며 그 크기는 해당 작업반의 경제성과 여하에 따라 좌우되었다.

한편 임금기금의 크기는 작업반이 생산계획을 완수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규정에서 제정된 도급임금 수준이 v 의 최고한도보다 30% 정도 낮았기 때문에 연간 취득한 등록노임 총액보다 크다. 이 경우 작업반원들은 자기가 번 등록노임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노동보수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생산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는 임금기금이 v 의 최고한도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m_2-(c_1+v_1)-(c_3+v_3)$ 부분도 조성될 수 없다. 이 경우 임금기금은 등록노임 총액보다 낮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작업반원들은 자기가 번 등록노임보다도 적은 임금을 실지로 받게 된다. 작업반에 조성된 임금기금은 반원들이 취득한 등록노임에 따라 결산분배시 아래 계산식에 따라 확정지불임금으로 계산되어 지불되었다.

$$\text{확정지불임금 } W_i = P_i \times T_w / \sum R_w$$

W_i : i 작업반원 임금

T_w : 임금기금(총수입-생산비지출)

P_i : i 작업반원 등록노임

$\sum R_w$: w 작업반 등록노임 총액

나) 보충분배: 작업반 상금지

작업반의 소득 $v+[m_2-(c_1+v_1)-(c_3+v_3)]$ 에서 임금기금을 v 의 최고한도까지 조성하고도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것은 $m_2-(c_1+v_1)-(c_3+v_3)$ (이

하 m^* 라고 칭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확대재생산기금, 상금기금, 건설기금 등으로 분배되었는데 임금기금이 v 의 최고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들 기금도 조성할 수 없었다.

작업반에서 m^* 가운데 상금기금을 조성하는 기준은 확대재생산기금과의 균형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규정되지만 작업반들 사이의 상금기금 조성 비율은 각 작업반의 경영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경영활동 평가는 생산계획에 대한 현물량 및 화폐액의 완수 혹은 초과 완수뿐만 아니라 지표별로도 완수 혹은 초과 완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지표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여 작업반별로 상금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개별 작업반원들의 상금액은 그들이 취득한 등록노임에 정비례하여 분배되었다. 따라서 상금기금의 실제의 비율과 크기 및 개별 상금액의 기본분배에 대한 비율과 크기는 국영농장 혹은 작업반간에 동일할 수 없었다. 동일 작업반 내에서도 개별 반원들 사이에서 상금액은 크게 다를 수 있었다.

과수부문을 제외하고 상금기금의 크기와 개별 작업반원들에 대한 상금액에 대하여 미리 규정된 최고한도는 없었다.²²⁾ 작업반채산제 도입 이전의 상금제들은 그것이 기본분배와 관계없이 지불되는 문자 그대로 상금이든, 보충지불의 성격을 띤 상금이든 모두 상금기금과 개별 상금액에 최고한도가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작업반원이 상금분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일 작업반에서 연간 90일 이상 작업에 참가하도록 했다. 작업반 별로 조성된 상금기금을 작업반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개별 상금액을 계산하여 지불하였다.

$$\text{개별 작업반원의 상금액 } B_i = P_i \times T_b / \sum R_w$$

B_i : i 작업반원의 상금액

T_b : 상금기금

P_i : i 작업반원 등록노임

$\sum R_w$: w 작업반 등록노임 총액

22) 상금기금의 조성비율이 계획초과율 10%, 11~15%, 16~20%, 20% 이상에 대하여 각각 50%, 55%, 60%, 65%로 제한되어 있는 과수부문의 경우에도 작업반원들에 대한 개별 상금액에는 최고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IV. 인센티브제도의 비교경제론적 분석: 소련·중국을 중심으로

1. 인센티브제도의 확립

사회주의 집단농장(국영농장 제외)의 노동보수지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동지출 및 노동보수지불의 척도로서 노동일 개념을 도입하고 획득한 노동일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불함으로써 사회주의 분배원칙인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득분배 절차를 보면 노동보수의 지불은 '잔여원리'의 규정을 받고 있다. 북한의 협동농장을 포함한 사회주의 집단농장의 소득분배는 곡물 및 조세의 국가납부의무와 협동농장 공동기금의 조성을 제일차적인 의무로 강제하였다.²³⁾ 따라서 노동보수는 생산비 지출과 이들 의무를 다하고 난 후 남는 잔여부분에 대해서 개별 농장원이 1년 동안 획득한 노동일에 따라 지불되었다. 농업집단화 완료 이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이 잔여원리에 입각한 노동보수지불체계를 확립하였다.

집단농장의 노동보수지불체계는 매월 정액임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국영농장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이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의 차이에 기인하는데 국영농장은 국가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지출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의 분배관계는 형성되지 않고 전량 국가소유로 납부된다. 반면 협동적 소유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집단농장에서는 모든 생산물이 집단농장의 공동소유이며 이로 인해 생산과정에 참여한 농장원들에게 생산물을 분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주의에서는 그 분배의 유일한 기준을 노동으로 규정하였고 농업생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지출의 척도로서 노동일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불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사회주의 집단농장에서 잔여원리의 규정하에 연말에 노동지출 및 지불의 척도인 노동일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이와 같은 노동보수지불형태는 물질적 자극의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로서 소유관계 혹은 집단경영

23) 북한에서는 1946년 6월 농업현물세 제도를 도입했으나 1966년 4월 이를 폐지하여 유일하게 농업부문에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스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노동보수지불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사회주의 집단농장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보수지불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상금제(보상제)와 전불제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상금제는 노동의 양적인 평가(노동일)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노동보수지불 방식의 문제점, 즉 노동의 질이 무시되는 경향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 도입된 보충분배 방식이다. 보충분배의 수단은 노동일(소련, 북한)이나 현금(중국)이었으며 노동일로 하는 경우 생산계획을 초과하면 가산해주고 미달하면 삭감하는 방식이었다.

상금제는 집단농장의 기본 생산단위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소련의 브리гада(Brigada), 중국의 생산대(生産隊), 북한의 작업반이 각각 그 보상단위였다.²⁴⁾ 소련에서는 해당 지역 콜호즈의 브리гада와 비교하여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 총 노동일의 10% 이내, 특히 성적이 좋은 브리гада원은 15% 이내, 반장은 20%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일을 가산하였다. 반대의 경우 총 노동일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일을 삭감하였다(모범정관 제15조). 중국에서는 생산대의 실제 생산량이 청부생산지표를 초과한 경우 생산초과 장려금을 지불하고 반대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적당히 배상'하도록 하였다(超産獎勵·減産賠償).²⁵⁾ 한편 북한도 작업반 단위로 생산계획을 초과한 경우 소련과 같이 노동일을 가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집단농장원들에 대한 분배는 연 1회 통상 수확이 종료된 11~12월에 결산분배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전불제가 실시되었다. 전도지급분은 기말분배액에서 공제되었다. 중국 고급농업생산합작사(高級農業生産合作社, 이하 고급사로 칭함)에서는 대개 연 2회 또는 수회에 걸쳐 전불제를 실시했으며 소련 콜호즈에서는 1년간

24) 중국의 생산대와 북한의 작업반이 고정적인 노동조직이었던 데 반해 소련의 브리гада는 상설적이기는 했지만 경작반의 경우 윤작기간이 일회전하는 동안, 축산반의 경우 3년 정도를 주기로 재편성되어 중국과 북한에 비해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소련의 콜호즈에서는 농작업의 전문화가 실시되지 않다가 1932년에 비로소 상설 노동조직인 브리гада를 설치하였다.

25) 아시아經濟研究所, 『中國人民公社の組織と機能 調査研究報告双書 第15集』(東京: 1961), pp. 212~213.

획득한 노동일에 따라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전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현물의 전도는 곡물의 탈곡개시 후 콜호즈 내부의 필요를 위해 공제된 탈곡곡물의 10~15%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모범정관 제16조).

공예작물을 재배하는 콜호즈의 경우 전도금 지불은 국가에 대한 납입을 완료한 후 납입성적에 따라서 이미 납입한 생산물에 대해서 콜호즈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60%의 비율을 토대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모범정관 제16조). 한편 북한에서는 현물전불은 총 분배량의 30%, 현금은 60% 범위 내에서 전불제를 실시했다(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 제48조).

2. 소련

콜호즈의 노동보수지불체제는 초기의 잔여원리의 규정을 받던 형태에서 출발하여 몇 차례의 개혁조치를 통해 물질적 관심을 더욱 더 자극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콜호즈의 노동보수지불체제는 최종적으로 잔여원리를 극복하고 임금형태에 가까운 매월 보증지불제로 변화했으며 급기야 탈집단화를 추구한 집단청부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보수지불체제의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된 상태에서 체제전환을 맞이하였다. 콜호즈 노동보수지불체제의 변화 양상을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스탈린정권 시대에 완성된 콜호즈의 노동보수지불체제는 본질적으로 노동일에 따른 평가로서 노동의 양적인 평가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작업의 질을 평가하여 상금제를 실시하기는 했으나(모범정관 제16조) 이 역시 노동일수를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생산유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 기술진보나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이 증가해도 기본적으로 획득한 노동일수에 따라 노동보수가 결정되어 생산의욕을 상실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텃밭경영에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과 콜호즈의 공동노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38년 하반기부터 1940년 4월에 걸쳐 콜호즈의 조직적, 경제적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노동지불체제와 관련하여 추가지불제가 도입되었다.

〈표 4〉 소련 콜호즈의 노동보수지불체계의 변화

노동보수 지불체계	시기	주요 내용	배경 및 개선 요인
잔여지불제	1933.2 ~ 195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보수지불체계 확립(1933.2) · 콜호즈모범정관 제정(1935.2) · 추가노동보수지불제(1940.12) -브리гада 혹은 즈베노가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한 경우 초과생산물 중 일부 (1/5~1/3)에 대해 평균가격의 50%를 현금으로 지급 -축산물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서 액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일에 따른 노동보수지불방식의 문제점 -덧발 경영 불법 확대 -기술개선이나 노동생산성 향상의 효과 미반영 -콜호즈 공동노동 소홀 -인센티브제고를 위해 추가노동보수지불제 도입
매월전불제	1956.3 ~ 195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현금 매월전불제(1956.3) -콜호즈 화폐수입의 25%와 계약수매 및 의무납입 대금수입의 50%를 가지고 매월 일정액 지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르시쵸프 농업개혁 조치의 일환 -콜호즈원의 물질적 관심 제고 -초기 전불제의 결점보완
보증지불제	1956.5 ~ 197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정액 보증지불제(1956.5) -습호즈 동종의 노동에 대한 지불액을 기준으로 산정 -생산계획 초과시 월 정액 보증지불액에 보너스를 가산 지불 -연말 최종계산은 잔여수확물에 좌우되었으나 급여자금은 잔여자금의 분배가 아니라 매월 보증수준에서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즈네프 농업개혁 조치의 일환 -비(非)스탈린화의 일환 -사회화의 완화 -잔여원리의 극복
청부시스템	1979.7 ~ 199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청부제 및 가족청부제 -청부집단에 일정기간에 걸쳐 토지 및 생산수단 제공, 콜호즈 집행부와 청부 계약에 의해 청부집단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작업 수행 -생산물의 자유 처분 불허 -생산계획과제, 노르마에 구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중국 농업개혁의 성공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청부제 -토지이용을 포함한 모든 생산관계를 임대차 계약에 의해 규제 -수매계약을 초과하여 생산한 생산물 자유 처분 	

자료: 大崎平八郎, 『ソヴェト農業政策史』(有斐閣, 1960); 細川隆雄, 『ソ連農業經營史』(晃洋書房, 1991); 佐々木 洋 譯, 『ソヴィエト農業(1917~1991): 集團化と農工複合の歸結』(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1995)를 토대로 필자 작성

스탈린에 이어 등장한 후르시쵸프는 콜호즈원의 물질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현물과 현금의 매월 전불제(1956.3)를 실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콜호즈원의 생산의욕을 자극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추진된 농업개혁의 일환이었다. 농업개혁은 농업생산계획의

작성과 정관의 수정 등 콜호즈의 자주성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전불제는 콜호즈 모범정관에도 규정(제16조)되어 이미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었으나 생산이 계절적이고 현금수입도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였으며 그 액수도 많지 않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매월 전불제는 콜호즈 화폐수입의 25%와 예약수매 및 의무납입대금의 50%를 가지고 매월 일정액의 전불을 실시하도록 권고되었다.²⁶⁾ 최종계산은 연 1회 결산분배시 노동일에 따라 분배된 총액에서 전도분(현물과 현금)이 공제되었다.

매월 전불제는 지급수준의 표준화 시도로서 월급제에 매우 가까운 제도였고 후르시초프정권 시대에 전도의 빈도와 액수가 증가하여 이것이 콜호즈원의 생계상태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매월 전불액은 콜호즈 화폐수입의 다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고 대체로 소액이었으며 1960년대 중반까지도 콜호즈원의 소득은 습호즈 노동자의 평균소득을 하회함으로써 전불제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²⁷⁾

1964년 10월 후르시초프 실각후 등장한 브레즈네프는 '사회화의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개혁을 실시했다. 중요한 개혁조치의 하나로 콜호즈원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매월 정액 보증지불제도(1966.5)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노동보수지불체계는 1930년대부터 줄곧 유지해오던 잔여원리를 부분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증지불제도하에서 연말의 최종계산은 여전히 수확의 다과와 모든 납입의무를 다한 후에 남는 잔여부분에 좌우되었으나 지불자금은 이전과 같은 잔여자금의 분배가 아니고 매월의 보증수준에서 분배되기 시작했다. 구원리에 의하면 급여기금은 단지 전체 지불의무와 콜호즈 사회기금을 공제한 후에 남는 자금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보증지불제도에서는 콜호즈의 수입 중에서 제일 먼저 보증지불을 위한 기금을 형성하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보증지불액은 습호즈의 동종 노동에 대한 지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

26) 佐々木 洋 譯, 『ソヴィエト農業(1917~1991): 集團化と農工複合の歸結』, p. 264.

27) 위의 책, p. 267.

고 콜호즈 경영자(의장, 회계, 전문가 등)들도 슥호즈의 같은 종류의 노동자와 동일한 보수액을 지불하였다. 증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증지불액에 보너스를 가산하여 지급하였고 풍작의 경우에도 연말의 결산분배시 추가지불을 실시했다.

보증지불제도의 실시는 한편으로는 콜호즈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콜호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콜호즈는 매월 보증지불액에 충당할 현금의 여유가 없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1965년 콜호즈의 단기차입금은 최저로도 4억 루블, 장기차입금은 39억 루블에 이르렀으며, 1970년까지 콜호즈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기가 25억 루블, 장기가 103억 루블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1966~70년까지 3,184개 소의 콜호즈가 파산하여 슥호즈로 개조되었다.²⁸⁾

브레지네프정권 말기인 1980년대 초반에 소련농업은 1930년대 농업집단화 이후 줄곧 유지되어오던 집단경영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농업이 분권화 정책을 실시하여 성공한 경험이 중요한 자극요인이었으며 결국 집단청부시스템이 도입되었다.²⁹⁾

집단청부제의 노동보수지불체계는 보증지불제도와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청부집단(주로 브리가다)에 일정기간에 걸쳐서 토지 및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콜호즈 집행부와 청부계약에 의해서 청부집단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최종성과에 따라서 노동보수가 지불되었다. 콜호즈내 청부집단은 생산계획과제, 노동정량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아니었으며 생산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 한편 집단청부제는 청부단위가 가족으로까지 분해된 가족청부제 형태도 존재했으나 콜호즈 집행부의 청부집단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심해 집단청부제는 커다란 성과를 보지 못했다.

집단청부제와 가족청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간섭을 받지 않은 보다 자율성이 높은 생산조직이 요구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임

28) 위의 책, p.268.

29) 細川隆雄, 『ソ連農業經營史』(東京: 晃洋書房, 1991), pp. 189~190.

대청부제(아렌다)가 도입되었으며 1987~88년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임대청부제에서는 토지이용을 포함한 모든 생산관계가 임대차라는 계약에 의해 규제되었다. 토지, 농기계 등 생산수단을 장기적(10~15년)으로 사용하는 대신, 콜호즈 집행부에 임차료를 지불하였다. 노동보수의 지불은 더 이상 콜호즈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청부집단내부의 문제로 전화되었으며 수매계약을 초과하여 생산한 생산물의 자유처분을 허용함으로써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였다.³⁰⁾

3. 중국

중국의 인민공사는 소련의 콜호즈와 달리 1978년 농업개혁시기까지 잔여원리에 기초한 노동보수지불체계가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사회화 초기부터 집권화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중국 농업체도의 특성상 제도의 틀 내에서 불법적으로 생산대(生産隊) 단위로 집단청부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도입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고급사가 인민공사로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대략 3가지 종류³¹⁾의 노동보수지불 방식이 존재하였으며 1958년 12월 10일 武漢결의를 통해 반임금제·반공급제 방식을 인민공사의 공식적인 노동보수지불 방식으로 확정하였다. 반임금제·반공급제는 먼저 식량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사 내에 보유하고 사원들에게 식량증을 지급하여 무상으로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한편 임금은 노동력에 따라 급수를 구분하여 임금을 계산하고 임금총액의 80% 전후를 기본임금으로 매월 사원에게 지급하고 20%를 장려금 기금으로 조성하였다. 장려금은 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가 각각 50%, 30%, 20%를 보유토록 하였다.³²⁾

인민공사제도는 1960년 이후 생산유인이 위축되는 부작용으로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였으며 1962년 「農村人民公社工作條例(草案)」(農業

30) 위의 책, pp. 215~219.

31) 1년에 2회 전분을 실시하고 연말에 청산하는 방식, 1노동일 단위를 고정시키고 노동에 참여한 일수에 따라서 지불하는 방식, 기본임금에 장려금을 추가하는 방식 가운데 각지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아시아經濟研究所, 『中國人民公社の組織と機能』, pp. 227~228.

60條로 약칭)이 채택됨으로써 인민공사제도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農業60條의 규정에 따라 인민공사에서는 3급소유관리제도가 실시되었다. 과거 고급사에서 인민공사로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일체의 소유권을 인민공사 소유로 전환하였던 것을 인민공사, 생산대대, 생산대의 3급소유로 세분화함으로써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를 진전시켰다.

3급소유관리제도하에서 20~30호로 구성된 생산대는 토지, 노동력, 농기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독자적으로 회계를 행하고, 이윤과 손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며, 생산을 조직하고 소득을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재산단위로서 자리매김되었다. 그러나 작목선택 등 생산계획에 대한 결정권은 계속해서 상부의 제약을 받았다.³³⁾

3급소유관리제도의 실시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진전되었으며 농업계획 작성시 생산대와 생산조(生産組)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한 인민공사의 형성과 함께 공사소유로 전환되었던 자류지(自留地)도 개인소유로 전환되었다. 3급소유관리제도의 실시로 노동보수지불 방식은 이전의 잔여원리에 기초하여 노동일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불하던 방식으로 회귀하였다. 기본 재산단위인 생산대에서는 현금 및 현물 총수입 중에서 먼저 농업세(5~15%)와 생산비(약 30%)를 제하고 다음으로 공동축적기금(3%, 1970년대 중반에는 10%), 복지기금(2%)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여부본(총소득의 60% 정도)을 노동일에 따라 노동보수로 지불하였다.³⁴⁾

4. 북한과의 비교

사회주의 집단농장의 노동보수지불체계는 생산유인을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 여부와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 진전여부의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들 두 측면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으로서 인센티브의 강화는 곧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주의 분배원칙인 '노동에 따른 분배'의 관철 측면에서 보면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

33) 이일영, 『1980년대 중국의 농업개혁: 농업생산성 및 농·공간 관계의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p. 19.

34) 위의 글, p. 19.

에서 집단화 완료 직후에 확립된 노동보수지불체계는 기본분배 외에 상급제와 전불제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사회주의에서 필연적인 요소로 규정된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은 그 본질에 있어서 생산유인을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노동보수지불체계를 통해 구현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별 농장원이 획득한 노동일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노동보수지불체계는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이 관철되는 형태로서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자극형태였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소련 콜호즈의 노동보수지불체계는 초기의 잔여원리에서 시작하여 몇 차례의 개혁조치로 생산의욕을 더욱 더 자극하는 형태로 개선되었으며 결국 임금제에 가까운 월 정액 보증지불제도로 변화하였다. 보증지불제도는 콜호즈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뒤따랐지만 소득의 분배시 노동보수를 우선적으로 분배하였다는 점에서 소위 잔여원리를 극복한 형태로 평가되며 농장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그렇지만 최종 계산은 연말 결산시 개별 농장원이 획득한 노동일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은 여전히 관철되고 있었다.

반면에 중국의 생산대에서는 초기의 잔여원리에 입각한 노동보수지불체계가 1978년 생산책임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변화없이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협동농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노동보수지불체계는 인센티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련의 그것에 비해 물질적 자극이 현저히 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협동농장의 노동보수지불체계는 소련과 중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잔여원리에 따른 노동보수의 지불이라는 기본 틀의 변화는 없었지만 사회주의 분배원칙인 ‘노동에 따른 분배’를 보다 엄격하고 정교하게 적용했다는 점과 개인분배몫의 증대는 반드시 집단(작업반과 분조)분배몫의 증대를 통해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노동보수지불체계를 집단주의 의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점이 특징적이다.

1966년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분조관리제는 노동일의 재평가 시스템으로서 노동의 질과 관련없이 노동일수의 확보에 치중하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보다

철저하게 관철한 형태였다. 특히 북한은 일반적으로 임금형태로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국영농장과 농기계작업소에까지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관철하는 노동보수지불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련과 중국의 그것에 비해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작업반우대제는 기본분배의 총량을 줄이고 보충분배(우대기금)의 크기를 확대하는 형태로, 분조관리제는 노동일의 재평가를 통해 각각 인센티브를 강화했지만 개인분배몫의 증가는 반드시 집단분배몫의 증가를 통해 실현되도록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제약하였다. 북한 농업부문의 인센티브제도인 보충분배형태는 작업반이나 분조를 단위로 하고 있고, 작업반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 직접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반이나 분조 구성원 전원의 집단적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충분배는 그 크기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적인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지만 그 가능성은 '집단적 물질적 관심'을 통해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적 물질적 관심'이 '집단적인 물질적 관심'의 자극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화되도록 하였다.³⁵⁾

한편 집단농장의 노동보수지불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강화의 또 다른 측면인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는 집단청부시스템의 도입으로 요약된다. 집단청부시스템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집단경영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노동일에 따른 분배원칙이 관철되는 노동보수지불체계의 파기를 의미한다. 초기의 집단청부시스템에서는 여전히 노동일에 따른 분배원칙이 관철되지만 점차 계약된 물량을 제외한 생산물의 자유처분이 허용되는 단계에서는 더 이상 노동일에 따른 노동보수지불체계는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집단화 초기부터 집권화의 정도가 약했던 농업제도의 특성상 분권화가 진전되었다. 3급소유관리제도의 정착으로 생산대가 기본 채산단위가 된 것은 분권화의 진전이었으며 불법적인 형태로 생산대 단위에서 청부시스템에 해당하는 책임생산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을 토대로 1978년 생산책임제의 전면적인 허용은 다시

35 홍달선, 『우리나라 농촌경리부문에 있어서 물질적 관심의 원칙의 창조적 적용』 p. 24.

말하면 책임생산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련에서는 노동보수지불체계 자체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분권화는 초기의 집권화 정도가 강했던 농업제도의 특성상 매우 느리게 진전되었다. 소련의 분권화 경향은 중국의 농업개혁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 들어 청부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집단청부제나 가족청부제에서는 여전히 콜호즈 집행부의 간섭과 통제가 심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임대청부제(아렌다)의 도입으로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났다.

중국과 소련에서의 분권화 경향은 소위 본격적인 체제 이행의 단계 이전에 자연사적으로 나타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농업부문에서 보면 집단경영시스템→분권화의 진전→급진적 개혁→계획경제시스템의 해체(청부시스템의 도입)→개인(가족)경영으로의 전환이라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겪었다.

이에 비해 북한의 협동농장에서는 분권화 경향이 진전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초에 전문적인 농업지도관리체계를 확립한 이래 현재까지도 집단경영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집권화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IV. 인센티브제도의 개혁방향성

1. 분석모형

북한체제의 개혁 방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제약요인은 정보와 지식의 결핍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을 광의의 이행기경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구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경험을 통해 그 방향을 유추해보는 비교경제론적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북한도 여타 이행기경제와 마찬가지로 체제전환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보편성에 그 뿌리를 두

고 있다.

이행기경제의 대표적인 체제전환 유형은 동유럽형과 동아시아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유럽형과 동아시아형의 차이점은 체제전환의 성격과 속도 및 방향에서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체제전환의 성격 측면에서 동유럽형은 본질적인 의미의 체제전환 모델이고 동아시아형은 체제개혁의 모델이다. 전자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붕괴의 모델인 반면 후자는 사회주의체제의 의도적인 개혁모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체제전환의 속도 및 방향 측면에서 동유럽형이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던 반면, 동아시아형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화와 소유제의 다양화를 추진하였다.

북한이 체제전환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체제내 경제개혁에 소극적인 현 시점에서 북한형 체제전환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논리적 비약을 허용할 경우 북한형은 전환의 성격, 속도 및 방향 측면에서 동유럽형보다는 동아시아형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동유럽형이 그 성격에서 사회주의 붕괴모델인 반면, 동아시아형은 사회주의 개혁모델이라는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한 데 따른다.

현 시점에서 북한형은 사회주의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형을 따를 개연성이 동유럽형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이 이미 1984년부터 합영법 제정을 시작으로 중국의 대외개방모델을 준거로 삼아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상해의 푸둥지구를 방문하여 개방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성이 동아시아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전환의 단계 및 구체적인 내용은 차별화될 수 있으며 결정적인 변수는 결국 북한의 초기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체제전환은 단순화하면 시장화와 사유화로 요약할 수 있다. 두 가지 요인 가운데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선행 이행기경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방향이 결정되었다.³⁶⁾ 북한형 체제전환

36) 그 동안 이행기 경제에 대한 논의는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의 원천이 자원배분

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동아시아형은 두 요인 중 '사회화의 완화', 즉 사유화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현재 북한은 두 요인 중 후자 노선에 따라 부분적인 소유제 개혁을 통해 사적 경제행위를 좀더 허용하는 정도의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1998년 수정된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부분은 제3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개방정책(중국식 특구위주의 개방)으로서 수정된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도 대내적 사적 경제행위보다는 대외 개방을 지원하는 데 더 의미를 두었다.

체제전환과정의 첫 단계인 체제내 경제개혁, 그 중에서도 농업제도개혁과 관련하여 두 요인을 평가해본다면 사유화요인이 좀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농업제도개혁은 그 출발점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만큼 노동보수지불체계에 좀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초점이다. 소련과 중국의 경험에서 보듯 그것은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 경향과 사경제 영역의 확대가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개혁여건: 동아시아형과의 비교

체제전환 비교모델에서는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이행기경제의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을 체제전환정책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인 체제전환 모델로부터 농업제도의 개혁에 국한된 분석을 위해 '농업제도의 개혁정책은 개혁 이전의 초기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여건을 집단농업의 경영관리시스템의 분권화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북한형의 모델인 동아시아형 체제전환모델에 속한 국가의 경험을 통해 개혁여건을 비교해 보고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기능의 열등성에 있으므로 공유제를 유지하되 자원배분기구만 시장으로 대체 하자는 시장사회주의론과 일정정도의 사적 생산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소유제 개혁론이 양립하였다.

북한 농업의 경영관리시스템은 집권화 정도가 매우 강하고 사경제 영역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이 개혁이전 동아시아형 국가의 초기조건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집단농장은 생산계획이 국가로부터 하달되었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중국의 경우 인민공사체제에서 3급소유관리제도를 시행하여 기본 생산단위인 생산대가 재산단위가 됨으로써 분권화가 진전된 초기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1978년 공식적으로 책임생산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불법적인 형태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한편 인민공사 사원의 총소득 중 부업소득의 비율은 소련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1977년부터 소득의 중요한 일부로 인정되고 소득의 향상도 장려되었다.³⁷⁾

베트남의 경우 1954년 북부 베트남에서 프랑스가 철수한 후 토지개혁과 농업집단화를 추진하여 1966년 이를 완료한 뒤 집단농업의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잔여원리의 규정을 받는 노동보수지불체계를 확립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들어 집단경영시스템에 대한 저항행위가 빈번하여 자류지(自留地)를 음성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일부 토지를 배분하여 경작케 하는 계약제를 채택하는 등 탈집단화 경향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76년 통일 이후 더욱 심해졌는데 특히 자류지의 불법확대가 극심하여 당초 村의 1인당 평균 경지면적의 5% 한도 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1988년 1월 공포된 토지법에서는 10%로 확대하였다. 농민들의 소득원에서 사경제로부터 얻는 소득의 비중이 북부지역의 경우 전체 농가소득에서 1962년 52%에서 1982년 70%로 증가하였으며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³⁸⁾

한편 통일 이후 남부 베트남에서 농업집단화 운동이 실패로 귀결된 후 베트남은 1981년에 집단농업 체제하에서 생산물계약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분적인 탈집단화를 추구하였고, 1986년 시작된 도이모이 개혁정책에 따라 1988년부터는 농가계약제를 실시함으로써 전면적 탈집단화를 완료하였다. 1993년 제정된 신토지법에서는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이되 농민

37) 송두율, 『소련과 중국』 (서울: 한길사, 1990), pp. 146~148.

38) 이한우, 『베트남의 농업개혁정책: 1975~1993』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8), p. 50.

들의 사적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사유화를 이룩하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분권화 경향과는 달리 북한 협동농장에서는 분권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들어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을 강조함으로써 집권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영농장의 작업반채산제는 국영기업 관리제도의 분권화 경향이 일부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국영농장의 생산계획이 국가로부터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관리시스템의 실질적인 분권화 경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편 사경제 영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공공분배체제(PDS)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이완되는 과정에서 그 비중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몰자부족으로 국영유통부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농민시장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식량확보를 목적으로 한 개간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달아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경제 영역의 확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분배체제의 붕괴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제도개혁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으며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극한상황에서 취한 방어적 조치로 평가되며 선행 이행기경제가 경험했던 체제내 개혁의 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요인이 결여되어 있다. 북한은 최근의 경제난 이전까지는 사경제 영역을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였다. 텃밭 경영도 처음에는 30~50평까지 허용(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 제6조)하였으나 1970년 사회주의헌법에서는 20~30평으로 축소하였고 농민시장도 사회주의의 필요악으로 간주하여 국영유통의 극히 제한적인 보완물로서만 인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북한의 개혁여건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5〉 북한의 인센티브제도 개혁여건의 SWOT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청부제의 맹아: 새로운 분조관리제 시행 · 대외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지배체제 · 주체사상을 대신할 개혁이론의 부재 · 자급형 개발전략(소규모 폐쇄경제) ·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 미비 · 사경제 영역의 발전 부진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 중국식 개혁·개방모델 선호 · 남북 화해 협력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체제경쟁 · 미국의 경제제재(embargo)

자료: 필자 작성

북한의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 추진의지와 집단청부제의 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시행은 개혁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의 개혁의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으며 1인 지배의 유일체제라는 북한 사회주의의 특수성, 주체사상을 대신할 개혁이론의 부재, 자급형 개발전략의 고수 등은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집권적 경영관리시스템의 분권화 경향이 극히 미미하여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조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개혁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현 단계의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개방경제로 그 특성을 요약할 수 있는데 개방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여부이다. 실지로 자본주의 맹주국인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였다. 북한은 현재 테러를 지원하는 '불량국가'로 지목되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자본주의국과의 교역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북한형 체제전환모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방정책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나아가 중국식 개방정책의 효과도 쉽게 기대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은 김정일 체제 출범이후 자본주의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개혁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개방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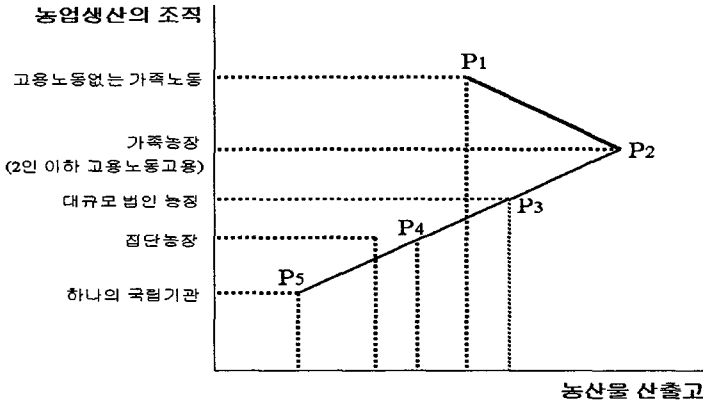
는 중요한 요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의 개방도시인 상하이 푸둥지구를 방문해 개혁개방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높이 평가한 점은 개혁가능성을 밝게 하는 기회요인이다. 또한 분단 50년 만에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한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기회요인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치 및 경제체제가 대립적인 남한의 존재가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다. 현 단계에서 북한이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개혁이 될 것이며 동아시아 형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정치체제의 이완은 항상 경계의 대상으로서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경계하자는 것이 북한의 주요한 입장이다.

3. 인센티브제도의 개혁방향성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센티브의 제고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국 농민들의 노동의 한계보수와 한계생산물이 일치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제도개혁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방향은 집단경영시스템→청부시스템→개인(가족)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될 것이며 개인(가족)경영의 요소가 더욱더 많아질수록 인센티브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분권화는 결국 탈집단화 과정으로서 실제 작업조직에 더 많은 경영상의 자주권을 부여하고 경영성과의 평가를 통해 물질적 관심을 제고시켜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 모형은 농업조직의 분권화와 산출의 관계를 분석한 T. W. Schultz의 분석을 응용해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Schultz는 집단농장의 경우 노동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가족경영(고용노동이 있는 경우 포함)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림 1〉 Schultz의 농업생산조직과 산출 분석



자료: 박정동, “북한농업구조의 개혁방향,” 『KDI 북한경제리뷰』(1999. 10), p. 25.

북한형 체제전환의 모델인 동아시아형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이행기경제의 농업제도개혁은 체제전환 이전에 이미 집단경영관리시스템의 분권화와 사경제 영역의 확대 과정을 전사(前史)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체제내의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분권화가 일정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체제전환 정책에 따라 집단경영시스템이 최종적으로 붕괴하고 개인경영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북한 농업부문 인센티브제도의 개혁방향성은 다름 아닌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의 진전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소련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의 경험에서 분권화 방안을 찾아본다면 베트남의 생산물계약제와 농가계약제, 소련의 집단청부제, 가족청부제, 임대청부제, 중국의 책임생산제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집단경영시스템을 탈피한 청부시스템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분배관계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 북한의 조건으로 본다면 분조관리제 시행단위

인 분조(구 분조는 10~25명, 신 분조는 가족, 친척중심의 7~8명)를 청부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996년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분조관리제에서는 이미 생산계획을 초과하는 생산물에 대해서 자유처분을 허용하고 있어 청부시스템의 맹아로도 평가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전통적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역사적으로 보면 몇 가지의 계기가 연속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즉 전통적 계획경제시스템의 붕괴의 역사는 시스템의 개선과 급진적 개혁과정이라는 전사(前史)가 존재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농업부문에서 집단경영시스템의 붕괴과정에 존재했던 전사는 분권화 경향이었으며 또한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사적 경영 영역의 확대였다.

소련의 집단농장인 콜호즈는 집권화 정도가 강해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 경향이 1980년대에 구체화되었으나 인센티브제도는 잔여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생산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브레즈네프정권 시대에 임금제에 가까운 보증지불제도를 도입할 때까지 소련의 노동보수제는 매우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보였으며 이것은 중국, 북한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다. 한편 중국 인민공사의 인센티브제도는 인민공사 초기에 잠시 공산주의적 분배방식을 채택했던 것을 제외하고 잔여원리의 규정을 받는 노동보수지불방식이 1978년 농업개혁시기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3급소유관리제도의 실시로 생산대가 기본채산단위가 되고 불법적인 형태였지만 책임생산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된 경험이 있어 소련에 비해 초기에 분권화가 진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북한 협동농장의 인센티브제도는 1960년과 1966년에 각각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를 도입한 이래 가장 초보적인 물질적 자극 형태로서 잔여원리의 규정을 받는 노동보수지불방식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화 수준이 낮은 협동농장을 궁극적으로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1960년대 초에 확립된 전문적 농업지도관리체계

를 변화없이 유지함으로써 분권화가 진전되지 않은 특징이 있다. 지난 1996년에는 분조규모 축소와 생산계획의 하향조정, 초과생산물의 자유처분을 허용하는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더 강화하는 정도의 변화 외에 분권화가 진전되었거나 잔여원리를 극복한 것도 아니었다. 북한은 최근에도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협동농장의 종합농장화를 추구함으로써 집권화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체제전환은 단순화하면 시장화와 사유화로 요약할 수 있다. 동아시아형은 두 요인 중 '사회화의 완화', 즉 사유화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현재 북한의 노선은 후자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분배체계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암묵적인 형태로 사경제 영역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법적, 제도적 개혁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형의 경우 사유화와 시장화 이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한 것이 특징적이다. 북한도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북한의 농업부문 인센티브제도의 개혁여건은 경영관리시스템의 집권화 정도가 매우 강하고, 사경제 영역 또한 최근의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개혁이전 동아시아형 국가의 초기조건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 이행기경제의 경험으로 볼 때 개혁의 방향성은 집단경영시스템의 분권화의 진전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농업제도상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집단청부시스템의 맹아로 평가되며 향후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분조를 청부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 율. 『베트남 경제개혁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개도국형 체제전환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8.
- 고뢰정 지음·이남현 옮김. 『북한경제입문』. 청년사, 1988.
- 김보근. 『북한노동보수제의 비판적 고찰: 평등과 효율의 관점에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승준. 『우리나라 농촌문제해결의 역사적 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88.
- 김운근·전형진. “북한 협동농장에서의 사회주의적 분배형태에 관한 연구.” 『북한농업연구』 제4권. 북한농업연구회, 1997.
- 김운근·전형진·문순철. 『북한의 농업개발전략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 김원삼·한득보.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연구에서의 몇 가지 이론문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농업경제학』. 1985.
- 송두울. 『소련과 중국: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농민·지식인』. 한길사, 1990.
- 박정동. “북한 농업구조의 개혁방향.” 『KDI북한경제리뷰』. 1999년 10월호.
- 변승호. “협동농장수입의 구성과 본질적 특성.” 『경제연구』 1999년 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1999.
- 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 『경제사전』(I·II).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손우택. 『중국의 소유제개혁에 대한 연구: 개혁이후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수진. 『소련의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1992.
- 이일영·전형진. “북한 농업제도의 전개와 개혁 전망에 관한 연구: 분조관리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9권 제2호, 1997.
- 이일영. 『1980년대 중국의 농업개혁: 농업생산성 및 농·공간 관계의

-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 이한우. 『베트남의 농업개혁정책 1975-1993: 탈집체화의 전개과정』.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장보인. 『조선에서의 농업협동경리의 지도관리문제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 전형진. 『북한농업의 사회주의적 협동화에 관한 연구: 일반성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
- 정경모·최달곤 편. 『북한법령집 제2권』. 대륙연구소, 1990.
- 정성진. 『한국경제에서의 마르크스 비율의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 정승화. 『중국 농업개혁의 전개과정과 효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조명철·홍익표.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0.
- 지해명. 『북한의 국영기업·협동농장 관리제도와 인센티브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93.
- 한스타머 외 공저. 김일영 옮김. 『도해 정치경제학』. 동녘, 1989.
- 한현주.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1995.
- 한국비교경제학회 편.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 박영사, 1995.
- 홍달선. 『우리나라 농촌경리부문에 있어서 물질적 관심의 원칙의 창조적 적용』. 과학원출판사, 1963.
- 편집동인 노동과 사랑 편. 『정치경제학 사전』, 이론과 실천, 1986.
- 大崎平八郎. 『ソヴェト農業政策史』. 有斐閣, 1960.
- アジア經濟研究所. 『中國人民公社の組織と機能』. 調査研究報告双書 第15集. 1961.
- 日本經濟研究所. 『最近の朝鮮の協同農場: 金日成テーゼ・分組都給制と農民生活』. 調査研究資料 3. 1967.
- 細川隆雄, 『ソ連農業經營史』, 晃洋書房, 1991.

佐々木 洋 譯. 『ソヴィエト農業(1917~1991): 集團化と農工複合の歸結』,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1995.